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7. 12.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6월 23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 라. 상정일자 :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7년 7월 6일)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구성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경찰관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 중 노량진·구로 경찰서장 제외 (안 제4조제1항제2호)
- 안전관리 위원회 임기중 해촉 사유란 삭제 (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및 자문단 간사 담당과장 변경 (안 제14조제1항 및 안 제3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통제관 변경 (안 제17조제1항제3호)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장소 변경 (안 제19조제1항)
- 안전관리 자문단 부단장 직책 변경 (안 제25조제1항)
- 조문을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2007.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 안 제4조제1항에는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구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노량진·구로경찰서장을 제외하였으며
- 안 제4조제1항·제14조제1항·제17조제1항·제25조제2항·제32조에는 “행정국장 또는 재난관리담당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구성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찰관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 중 노량진·구로 경찰서장 제외 (안 제4조제1항제2호)
- 안전관리 위원회 임기중 해촉 사유란 삭제 (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및 자문단 간사 담당과장 변경 (안 제14조제1항 및 안 제3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통제관 변경 (안 제17조제1항제3호)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장소 변경 (안 제19조제1항)
- 안전관리 자문단 부단장 직책 변경 (안 제25조제1항)
- 조문을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및 대상)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필요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07. 6. 1 ~ 6. 18) 결과 “의견반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영등포소방서장

2. 영등포경찰서장

3. 제7688부대 1대대장

4.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5.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6. 영등포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
가. 영등포역장

나.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다. (주)케이티(KT)영등포지점장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등포지사장

마. 서울도시가스(주) 대표이사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바뀌면 바로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

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치수 방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관할구역의 재난응급대책 총괄·조정 및 집행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

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관할구역의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통제관·반장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하고, 각 실무반의 반장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반장은 반별 주무과장이 된다.
- ②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 ③ 실무반 근무자는 해당 재난수습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④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반장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19조(대책본부 설치장소) ① 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상황실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재난사고 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난수습과 관련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자문단

제20조(안전대책관계관 회의)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

관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수습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와 명단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나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 요원과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공작물 및 대형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과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5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관련전문가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나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7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자문단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는 구청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과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면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치수방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3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